



## 독일의 부정부패에 대한 신고의무에 대한 입법례

정보신청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심사기획과

### I. 머리말

부정부패(Korruption)는 사람이 존재하는 곳이면 발생할 만큼 그 역사와 뿌리가 너무나 깊은 범죄행위로, 과거에는 개발도상국 또는 후진국에서나 발생하는 범죄로 간주되었지만, 지금은 선진국을 포함한 전세계적인 범죄행위로서 간주되어지고 있다. 그리고 부패행위는 어느 한 국가 내에서 정치, 행정 그리고 그러한 정치 또는 행정의 도움을 통하여 어떤 이득을 얻고자 하는 자들간의 특수한 관계로만 파악되었지만, 지금은 특히 경제적 세계화를 통하여 세계가 하나의 시장이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전세계적인 범죄행위로 간주되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패행위를 발견하여 처벌하고, 미래의 부패행위를 방

지하기 위해서는 전세계적으로 국가적인 협력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그러한 이유로 국제사회에서는 부정부패를 예방하고 처벌하기 위하여 부정부패에 대한 UN협약, 「유럽연합의 부정부패에 대한 형법통일에 대한 협정」 외국 공무원의 뇌물죄에 대한 OECD협약 등을 통하여 부정부패에 대한 예방을 위한 규정을 전세계적으로 통일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sup>1)</sup>

부정부패에 대한 범죄의 특징은 피해자가 없는 범죄로서 특정의 개인적 피해자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부정부패를 통하여 발생된 손해의 피해자가 된다. 따라서 결국에는 이러한 부패행위를 통하여 국민이 납부해야하는 세금이 증가하거나, 국민이 납부한 세금을 통해 형성된 국고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손실되기



1) 이러한 국제조약 또는 협정 중에서 독일은 외국 공무원의 뇌물죄에 대한 OECD협약은 비준하였지만, 다른 국제조약 또는 협약은 비준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른 국제조약 또는 협약에 따른 부정부패의 처벌 및 예방이 기존의 독일 국내법의 규정을 통해서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나, 기업의 뇌물공여행위로 발생된 비용을 제조물의 가격에 부담시켜 상품의 가격을 상승시켜 소비자에게 부당한 가격을 지불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이처럼 특정된 개인적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형법적인 의미에서, 고소를 제기하거나 증인으로서 조사할 수 있는 개인이 없다는 의미이고, 고소제기가 없으면 결국은 형사소추기관의 인지를 통한 수사만이 가능한데, 이러한 형사소추기관의 인지수사는 그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결국 부정부패와 관련된 범죄들은 대부분 발견되지 않고 은폐되어, 숨은 범죄(암수범죄)가 증가하여 형사소추기관의 집행결핍을 발생시켜,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형사소추기관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게 만든다.<sup>2)</sup>

부정부패범죄의 또 다른 특징 중의 하나는 부정부패가 구조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적 기업은 이익의 극대화를 기업경영의 목표로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구성원의 부정부패는 그들의 비용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방해물이지만, 그러나 기업간의 과도한 경쟁 또한 기업의 입장에서 이윤 극대화의 방해물이기 때문에, 이러한 과도한 경쟁을 제거하거나 제한하기 위하여 해당 공

무원이나 정치인을 매수하여 그들의 기업활동에 도움을 받고자 기업의 경영전략의 일환으로 이러한 부정부패범죄가 발생되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적인 부정부패의 특징은 장기간에 걸쳐 다수인이 참여하는 형태의 부정부패로서, 그러한 행위자는 그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결국 장기간, 다수인이 참여하고 불법인식이 결여된 부정부패범죄를 통하여 사기, 배임, 조세포탈과 같은 다른 범죄와 연결되며, 그 피해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게 된다.<sup>3)</sup>

이처럼 부정부패와 관련된 범죄행위는 피해자가 없는 범죄형태이고 또한 구조적인 범죄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정부패의 범죄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또한 그러한 범죄행위가 발생하거나 범죄혐의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형사소추기관이 그러한 범죄행위를 인지하여 수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부정부패 범죄행위 또는 범죄혐의를 형사소추기관이 신속하게 인지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부정부패행위에 대한 혐의가 있는 경우 그러한 혐의를 신속하게 상급기관과 형사소추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방법일 것이다.

여기에서는 독일의 입법례에서 부정부패와 관



2) Wolfgang Schaubenstein, Wachstumsbranche Korruption, in: Bundeskriminalamt (Hrsg.), Wirtschaftskriminalität und Korruption, 2003, S. 76.

3) Britta Bannenberg, Korruption in Deutschland und ihre strafrechtliche Kontrolle, in: Bundeskriminalamt (Hrsg.), Wirtschaftskriminalität und Korruption, 2003, S. 47.

련된 범죄행위에 대한 규정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범죄행위의 혐의가 존재하는 경우에 이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II. 독일의 현행법에 있어서 부정부패와 관련된 범죄

### 1. 부정부패행위에 대한 개념

한국에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4호에 따르면 부패행위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가목),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나목), 그리고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독일에서도 부패행위에 대하여 한국과 동일하게 정의되고 있고, 특히 법적 의미에 있어서 부정부패는 행정, 사법, 경제, 정치 또는 비영리 단체의 정상적인 기능에 있어서 신뢰에 기초한 지위를 남용하여 법적으로 정당하게 요구될 수 없는 물질적 이익 또는 비물질적인 이익을 획득하

는 행위를 의미한다. 결국 부정부패는 도덕적 타락을 의미하며, 장기적으로는 민주주의의 체계를 손상시키기 때문에<sup>4)</sup>, 독일에서는 민주주의 파괴의 원흉으로 간주되어진다.

부정부패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독일에서는 그 피해규모가 대규모로 발생하기 때문에 대규모범죄(Makrokriminalität)라고 부르고 있다. 오늘날 점점 더 조직적인 범죄실행을 통한 구조적인 문제로 간주되고, 이러한 조직들은 위계질서를 갖추고 있어 명령전달체계가 명확하고, 조직내부에서 분업화를 통한 업무의 분할이 잘 이루어져 있다. 그로 인하여 행위자의 익명성이 보장되어 행위자에 대한 형법적 책임귀속이 어렵고, 조직내부의 업무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 그 업무담당자를 언제라도 다른 사람으로 교체할 수 있기 때문에 조직화된 범죄(Organisierte Kriminalität)로 부른다. 또 그 문제의 심각성을 테러리즘, 마약생산 및 판매, 인신매매, 조직적 경제범죄처럼 조직을 통한 범죄와 같이 취급하고 있다.

### 2. 독일 형법전에 규정된 부정부패범죄행위

#### (1) 공무원의 뇌물죄

독일 형법전에는 공무원의 뇌물수수에 대한 조항을 제331조에서 제335조까지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 또는 공적 서비스 관련 특수업무자



4) Britta Bannenberg, Korruption in Deutschland und ihre strafrechtliche Kontrolle, in: Bundeskriminalamt(Hrsg.), Wirtschaftskriminalität und Korruption, 2003, S. 50.

(Cein für den öffentlichen Dienst besonders Verpflichteter)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이익을 요구, 약속 또는 수수한 경우에는 그 수수자인 공무원과 공적 업무에 대한 특별의무자(제331조 제1항)와 그 공여자(제333조 제1항)에게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Geldstrafe)이 부과된다. 여기에서의 이익의 수수는 공무원이 그러한 이익에 대한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공무수행에 대한 등가성으로서의 이익을 의미하며, 따라서 그러한 경우에는 공무수행이 위법할 필요는 없다. 이것이 제332조의 뇌물죄와 다른 점이다.

그러나 공무원이 요구하지 않은 이익을 약속 받고 해당관청에 의하여 그러한 수수를 허가받거나 또는 공무원이 이익을 수수한 후 해당 관청에 지체없이 보고하고, 해당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경우에 그 수수자(제331조 제3항)와 그 공여자(제333조 제3항)는 제331조 제1항 또는 제333조 제1항에 따라서 처벌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무원이 이익을 요구한 경우에는 수수자와 공여자 모두 처벌된다.

공무원 또는 공적 업무에 대한 특별의무자가 공적 의무를 위반한 공무행위 또는 공적 의무를 위반할 수 있는 사후의 공무행위에 대하여 그 반대급부로서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이익을 요구, 약속 또는 수수한 경우에 수수자로서 공무원 또는 공적업무에 대한 특별의무자(제332조 제1항)와 그 공여자(제334조 제1항)에게는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이 부과된다. 사건이 경미한 경우에는 그 수수자에게 3년 이하의 자

유형 또는 일수벌금형이 부과되고(제332조 제1항), 공여자에게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일수벌금형이 부과된다(제334조 제1항). 제332조 제1항의 범죄에 대한 미수의 경우에 그 미수범인 공무원 또는 공적업무에 대한 특별의무자는 그 미수범으로서 처벌된다(제332조 제1항).

또한 공무원이 사후의 공무행위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이익을 요구, 약속 또는 수수한 경우에, 그러한 공무행위가 공무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또는 그러한 행위가 그의 재량권의 범위 내에 속하지만, 그러한 재량권의 행사에 있어서 그 이익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제3자에게 보여지는 경우에 그 수수자로서 공무원 또는 공적 업무에 대한 특별의무자(제332조 제3항)와 공여자(제334조 제3항)는 제332조 제1항과 제334조 제1항에 따라서 처벌된다.

제332조 제1항과 제3항이 연결되면 중한 사례로서 그 이익수수자인 공무원과 공적 업무에 대한 특별의무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이 부과되고(제335조 제1항 1호 a목), 그 공여자(제334조 제1항과 제3항이 연결된 경우) 또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이 부과된다(제335조 제1항 1호 b목).

위의 규정에 대하여 법관과 중재인에 대하여 별도의 조항을 두고 있는데, 재판행위와 중재행위 또는 사후의 재판행위와 중재행위에 있어서 그러한 행위의 반대급부로서 이익을 요구, 약속 또는 수수한 경우에는 이익수수자인 법관과 중재인(제331조 제2항)과 그 공여자(제333조 제2항)에게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일수벌금형

이 부과되며, 이익수수자인 법관과 중재인은 그 미수의 경우에도 처벌된다(제331조 제2항).

이 경우 공무행위로서 재판행위와 중재행위가 위법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재판행위와 중재행위로 인하여 법관과 중재인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이익수수자인 법관과 중재인에게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제332조 제2항)과 공여자에게는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이 부과되며(제334조 제2항), 사후의 재판행위와 중재행위를 통하여 법관과 중재인의 의무를 위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익수수자인 법관과 중재인에게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제332조 제2항)과 공여자에게는 미수와 기수를 포함하여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제334조 제2항)이 부과된다.

제332조 제2항의 경우에 사건이 경미한 경우에는 법관과 중재인에게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이 부과된다(제332조 제2항). 제332조 제2항과 제3항이 연결되면 중한 사례로서 그 이익수수자인 법관과 중재인은 2년 이상의 자유형이 부과되고(제335조 제1항 2호), 그 공여자(제334조 제2항과 제3항이 연결된 경우) 또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이 부과된다(제335조 제1항 1호 b목). 여기에서 중재인에 대한 사례, 즉 제331조에서 제335조까지의 뇌물죄에 해당되는 이익이란 중재인이 다른 당사자 모르게 어느 한쪽의 당사자에게 이익을 요구, 약속 또는 수수하거나 어느 한쪽의 당사자가 중재인에게 다른 당사자 모르게 이익을 제공, 약속 또는 승낙한 것을 말한다(제337조).

위에서 언급된 제335조 제1항 이외에 뇌물죄에 대하여 중한 사례의 경우에는 공무원 또는 공적 업무에 대한 특별의무자와 그 공여자에게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 법관 또는 중재인에게는 2년 이상의 자유형이 부과되는데, 여기에서의 중한 사례는 범죄행위로 인한 뇌물액수의 규모가 큰 경우, 행위자가 사후의 공적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계속적인 이익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뇌물죄의 지속적인 행위를 위하여 행위자가 영업적으로 행위하거나 어떤 단체의 일원으로서 행위한 경우이다(제335조 제2항).

이러한 중한 사례의 뇌물죄에 있어서 형법 제73d조에 따라서 위법한 범죄행위를 위한 이익 또는 위법한 범죄행위로 획득한 이익이라는 가정이 성립되는 행위자 또는 범죄참가자의 이익은 몰수하며, 범죄 후에 행위자 또는 행위참가자의 이익을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해당되는 것은 추정해야만 한다(제338조). 제331조에서 제335조까지의 의미에서의 뇌물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행위는 부작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취급된다(제336조).

상사가 그의 부하직원이 위법한 행위를 하도록 유혹하거나 유혹을 시도하거나 또는 그의 부하직원에게 의한 위법한 행위가 발생하도록 방치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 규정된 법정형이 상사에게도 적용된다.(제357조 제1항)

## (2) 뇌물죄와 관련된 돈세탁 범죄

또한 소위 돈세탁의 사례로서 공무원 또는 공적 업무에 대한 특별의무자의 의무위반으로 인한 공무행위 또는 사후의 공무위반으로 발생한 뇌물죄의 경우에 그러한 뇌물의 출처를 은폐하거나 출처에 대한 수사, 몰수 또는 추징, 또는 몰수해야 하는 뇌물의 보관 및 유지를 방해하는 자(제261조 제1항), 그리고 이러한 뇌물을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알선, 보관 또는 사용하게 하는 자(제261조 제2항)는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이 부과되며, 그 미수범 또한 처벌된다(제261조 제3항).

돈세탁범죄를 영업적으로 계속 실행하거나 어떤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돈세탁범죄를 계속해서 실행하는 자는 제261조 제1항과 제2항의 중한 사례로서 6개월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이 부과된다(제261조 제4항). 이러한 돈세탁범죄의 실행과 관련된 물건은 몰수 또는 추징한다(제261조 제7항).

### (3) 선출직 공무원의 선거와 투표에 있어서의 매수행위

독일에 선거를 통하여 선출되는 공무원, 즉 유럽연합의회, 연방의회, 각 주의 주의회, 우리나라의 시군구에 속하는 각 주의 지방자치단체의 회에 있어서 선거 또는 투표와 관련되어 득표 또는 동의를 위한 표를 매수하거나 판매하고자 시도하는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일수벌금형이 부과된다(제108e조 제1항). 본 죄로 인하여 6개월 이상의 자유형이 부과된 자에게는 자유형과 병과하여 공직선거에 피선거권과 공무

담임권을 박탈할 수 있다(제108e조 제2항).

### (4) 부정부패를 통한 사적 영역에서의 경쟁의 제거 또는 제한

상거래에 있어서 어떤 상업적 회사의 사무원 또는 위임인으로 자유로운 경쟁체계 내에서의 상품 및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을 부당한 방식으로 우대하고 그 반대급부로서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이익을 요구, 약속 또는 수수한 자(제299조 제1항), 이러한 이익을 공여한 자(제299조 제2항)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일수벌금형으로 처벌된다.

또한 제299조 제1항과 제2항의 범죄를 외국에서 범한 자도 동일하게 처벌된다(제299조 제3항). 그리고 제299조의 범죄를 통한 이익의 규모가 크거나 행위자가 영업적으로 그러한 범죄실행을 지속하거나 범죄단체의 일원으로서 그러한 범죄행위를 지속적으로 실행하는 자는 중한 사건으로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으로 처벌된다(제300조).

단, 제299조의 범죄행위는 형사소추기관이 아주 특별한 공적 이익 때문에 직권으로 개입해야만 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면 피해자, 이러한 부당경쟁과 관련된 경영인, 단체 그리고 위원회 등의 고소가 있어야만 기소할 수 있다(제301조). 그리고 이러한 범죄행위와 관련된 이익은 몰수 또는 추징한다(제302조).

## 3. 연방공무원법상의 정년퇴임 공무원과 공무원이었던 자의 부양비에 대한 보고의무

연금을 받고 있는 퇴직공무원 또는 전직 공무원인 자가 공무원 관직의 종료후 5년동안 공무수행 이외의 어떤 고용 또는 영업활동을 통하여 연금을 받고 있는 그러한 고용 또는 영업활동이 공무원의 고용관계 종료 이전 5년 동안의 공무활동과 관련되어지고 그러한 활동을 통하여 공적 이익이 침해되어질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고용 또는 영업활동을 직전 최상급기관에 신고하여야만 한다(연방공무원법 제69a조 제1항). 이러한 고용 또는 영업활동을 통하여 공공의 이익이 침해될 위험이 존재하면, 그러한 고용 또는 영업활동은 금지되고(연방공무원법 제69a조 제2항), 이러한 금지는 직전 최상급기관에 의하여 결정되고, 결정된 금지는 공무원고용관계의 종료 후 5년까지 존속된다. 최상급기관은 이러한 권한을 하위의 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연방공무원법(Bundesbeamtengesetz) 제69a조 제3항).

#### 4. 공무원과 공적 업무에 고용된 피고용자의 사례 또는 선물 수수행위의 금지와 보고의무

공무원은 재직시뿐만 아니라 공무원고용관계 후에도 그의 공무와 관련되어 어떠한 보수(Belohnungen) 또는 선물을 받아서는 안된다. 다만 최상급 또는 차상급 관청의 동의를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이러한 동의를 위한 권한은 다른 관청에 위임할 수 있다(연방공무원법 제70조).

또한 공적 업무에 고용된 피고용인 또한 그의 활동과 관련되어 사례 또는 선물을 제3자에게

수수할 수 없고, 다만 고용자의 동의를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사례 또는 선물의 수수가 인정되고, 피고용자에게 그러한 사례가 제안된 경우에는, 피고용자는 지체없이 고용인에게 신고하여야만 한다(공적 서비스를 위한 요금계약(Tarifvertrag für den öffentlichen Dienst: TVöD) 제3조 제2항).

### III. 부정부패에 대한 신고의무

한국에서는 부패방지를 위하여 부패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공무원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6조와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에 규정하고, 이러한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서 징계한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한국에 있어서는 직무행위 중에 부패행위를 인지한 모든 공무원이 신고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독일에 있어서는 연방행정지침을 통하여 각 행정관청은 부패방지를 위한 담당관을 임명하고, 상사에게 부하직원에 대한 감시와 감독의 의무를 지우기 때문에, 부패방지를 위한 담당관과 자기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부하직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감시와 감독의무가 있는 상사가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담하고, 그 외에 조세관련 부패행위와 관련하여 이를 인지한 자에게 부담되는 신고의무가 존재한다.

## 1. 부패방지 담당관제

부정부패를 예방하기 위하여 독일 연방내무부는 정부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2004년 ‘연방행정에서 부패방지를 위한 연방정부지침(Richtlinie der Bundesregierung zur Korruptionsprävention in der Bundesverwaltung; 이하 ‘연방지침’)에서는 부패위험이 아주 심한 영역을 분석하고 확정하여(연방지침 제2조), 이러한 영역에 있어서 부패방지를 위하여 부패에 대한 다자간감시체계와 해당 영역의 결정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연방지침 제3조), 이러한 부패위험이 아주 심한 영역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피고용인에 대한 업무기간을 특별한 경우<sup>5)</sup>가 아니라면 5년으로 제한하고 있다(연방지침 제4조 제2항).

이러한 연방지침의 특징 중의 하나는 모든 기관이 부패방지를 위한 담당관(이하 ‘담당관’)을 임명해야만 하는 것이다(연방지침 제5조). 관청의 업무와 규모에 따라서 담당관을 임명하고, 담당관 1인이 다수의 관청을 담당할 수 있고, 담당관은 부패와 관련된 직원과 관청의 운영에 대한 조언자 구실을 하며, 합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피고용인에 대한 조사, 부패의 징후에 대한 관찰과 평가, 부패방지와 관련된 교육에 있어서의 참가 요구 등의 권한을 소유한다(연방지침 제5조

제1항).

부정부패와 관련된 범죄의 혐의가 있는 사실관계를 인식하면, 담당관은 그러한 혐의를 책임자(Pienstsfellenleitung)에게 보고하고, 이것과 관련하여 내부조사, 은폐에 대비한 조치 그리고 형사소추기관에 대한 신고를 위한 조언을 한다. 이러한 경우에 관청 책임자는 사실관계의 해명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연방지침 제5조 제2항). 관청 책임자는 사실관계를 통하여 확인된 부정부패 범죄에 대한 혐의를 지체없이 검찰과 상급관청에 보고하고, 내부조사와 부정부패행위의 은폐에 대비한 예방조치를 취해야만 한다(연방지침 제10조).

## 2. 상사의 업무감독 및 신고의무

상사는 자신의 업무영역에 속하는 부하직원에 대한 업무감독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만 한다. 이러한 지속적 업무감독에 있어서 부정부패에 대한 징후를 특히 주의하여야만 하며, 부정부패의 위험이 있는 동료·부하직원에 대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연방지침 제9조).

## 3. 조세범죄에 대한 신고의무

이익의 기부 또는 그와 관련된 비용이 형법의



5) 이러한 근무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서류를 통하여 증명하여야만 한다(연방지침 제4조 제2항).



구성요건을 실현하여 형벌이 부과되거나 어떤 법률에 위반되어 과태료 또는 질서위반금이 부과될 수 있는 위법한 행위인 경우에는 그러한 이익의 기부 또는 그와 관련된 기업의 비용은 감세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위와 같은 위법한 행위에 대한 혐의를 공무 중에 인지한 법원, 검찰청 또는 행정관청은 해당사실을 세무관련 관청과 조세범죄 또는 조세관련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소추를 위하여 검찰청에 보고하여야만 한다. 세무관련 관청은 범죄 또는 질서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는 해당사실을 검찰청 또는 행정기관에 보고하고, 검찰청과 행정기관은 해당 사실과 그에 대한 결과를 세무관련 관청에 통지해야 한다(소득세법(Einkommensteuergesetz) 제4조 제5항 제10호).

그리고 조세범죄의 혐의에 대하여 공무 중에 인지한 법원과 연방관청, 각 주의 관청 그리고 공공행정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사실을 세무관련 관청에 통지하여야만 한다(세법(Abgabenordnung) 제116조 제1항).

#### 4. 신고의무위반에 대한 징계

##### (1) 독일형법상의 상사의 감시와 감독의무위반에 대한 처벌

다른 공무원의 공적 업무에 대한 감시와 감독을 해야 하는 공무원에게 있어서 다른 공무원이 저지른 위법한 행위가 그의 감시와 감독의 영역 속에 포함되는 업무인 경우에는 형법 제357조

제1항에 따라서 상사는 부하직원인 행위자와 동일하게 처벌된다(형법 제357조 제2항).

##### (2) 연방공무원징계법에 따른 신고의무위반에 대한 징계

보고의무를 위반한 자는 연방공무원징계법에 따라서 처벌된다. 연방공무원징계법은 공무원이 그의 공무원고용관계에 있을 때 행해 직무위반과 전직 공무원 또는 공무원고용관계가 종료된 공무원의 경우 그의 공무원고용관계 동안에 행한 직무위반행위는 징계된다(연방공무원징계법(Bundesdisziplinargesetz) 제2조). 징계의 종류는 공무원인 경우에는 견책 및 경고, 과태료, 감봉 그리고 파면이며, 전직 공무원 또는 공무원고용관계가 종료된 이전의 공무원은 연금의 감액 또는 연금수령권(권한≠권리) 박탈이다.

**이 재 일**

(독일 주재 외국법제조사원)